

at|get

GLOBAL EXPORT
TRENDS

2014

AUG

K-04

유기가공식품의 해외수출 활성화 전략 :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 I. 유기가공식품의 해외수출 활성화 전략 :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 II. 국제 금융시장
- III. 최근 주요국의 검역 및 수입제도 변경 사항

유기가공식품의 해외수출 활성화 전략 :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I. 유기가공식품의 해외수출 활성화 전략 :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 | | |
|-----------------------------------|----|
| 1. 유기가공식품의 국내 현황 | 4 |
| 2. 미국 및 중국의 유기가공식품 시장 현황 | 11 |
| 3.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과 의미 | 17 |
| 4. 유기가공식품의 수출활성화 전략: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 20 |

II. 국제 금융시장

- | | |
|------------|----|
| 1. 국제 외환시장 | 33 |
| 2. 국제 상품시장 | 34 |

III. 최근 주요국의 검역 및 수입제도 변경 사항

- | | |
|------------------|----|
| 1. 최근 검역제도 변경 사항 | 39 |
| 2. 최근 수입제도 변경 사항 | 44 |

I. 유기 가공식품의 해외수출 활성화 전략

: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1. 유기 가공식품의 국내 현황
2. 미국 및 중국의 유기 가공식품 시장 현황
3. 한-미 유기 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과 의미
4. 유기 가공식품의 수출활성화 전략: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 유기가공식품의 개념과 국내 시장 현황 △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시장 및 수입 현황 △ 중국의 유기식품 생산 및 시장 현황 △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의 의미 △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전략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시장규모가 2014년 기준 약 15조 7천억 원이고, 중국은 한국의 2배 이상인 1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국은 최근 1년 동안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계 획량이 4백 9십만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두부, 유제품, 차(茶)류 등 일부 소수의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지난 7월 1일 발효된 한-미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상호 동등성 협정은 우리 유기가공식품 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 향후 EU와 캐나다 등 다른 국가와의 협정 체결 가능성 증대, 미국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시 세계 유기가공식품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교두보 확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유기가공식품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 질 것이다. 반면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미국에 대한 수출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품질 안전 농산물 공급확대’와 ‘농식품 수출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기여할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생산 및 수출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유기가공식품 수출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기인증 제도에 대한 정부간 협력을 통하여 필요시 국가간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을 추진하고, 급성장하는 유기식품 시장에 대한 정보와 연구 및 수출 지원시스템을 갖추어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및 수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글로벌 유기식품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별·상품별 차별화된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미국 진출을 통하여 중국시장 선점의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유기산업의 수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유기식품시장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유기가공식품의 국내 현황

1) 기본 개념

●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법률’ 제2조 4항))을 의미한다.

- 현재 우리나라는 친환경 농수산물¹⁾을 크게 유기 농수산물과 무농약 농수산물등²⁾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유기 농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유기가공식품으로 정의한다. 또한 이러한 유기가공식품과 유기농수산물을 합하여 유기식품으로도 일컫는다.

■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



- 정부는 유기식품의 산업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으며(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법률 제19조 1항), 인증 받은 사업자는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등과 같은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³⁾.

1) 정부는 2010년부터 저농약 농수산물에 대한 신규 인증을 중단하였으며, 2016년부터 저농약 인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
 2)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수산물을 통칭하여 본고에서는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사용한다.
 3) 정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제’를 폐지하고, ‘인증제’만을 두어 유기가공식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였다.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인증마크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 국내 유기가공식품 현황

- ◆ 유기가공식품의 국내 생산, 유통, 소비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유기가공식품 인증 현황과 수입현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인증현황은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고, 유기가공식품 수입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매년 발간하는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 ◆ 2013년 말까지 유기가공식품은 ‘표시제’와 ‘인증제’가 병행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이중 유기가공식품 품질인증 건수는 2004년 38건에서 2010년 378건으로 10배 정도 증가하였고, 품목수도 2007년 100개에서 2010년 1,290개로 크게 증가하였다(정חק균·장정경, 2011).

 - 반면 국내 유기가공식품 출하량은 2004년 1,340톤에서 2008년 1,748톤으로 소폭⁴⁾ 증가에 그치고 있다.

4) 2005년 풀무원이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 국내 유기농식품 품질인증 실적(2004~10년) ■

(단위: 건 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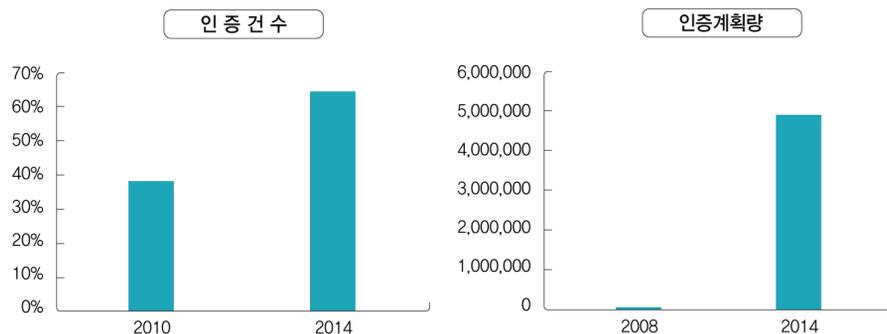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인증건수	38	99	194	187	231	251	378
품목수	-	-	-	100	125	745	1,290
출하량	1,340	235	1,103	1,893	1,748	-	-

출처: 정학균·장정경(2011, p15) 재인용

2014년부터 유기농식품은 ‘인증제’로 일원화되었는데,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 까지 최근 1년간 유기농식품의 인증건수는 총 647건이고, 인증계획량은 4.9백만 톤 수준이다.

- 2010년 378건보다 최근 1년간의 건수는 약 1.7배 증가한 것이고, 2008년 1,748톤의 출하량보다 최근 1년간의 인증계획량은 무려 약 2,800배 증가한 셈이다.
- 실제 출하량과 인증계획량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유기농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이 1년임을 감안하면 1년 동안의 인증계획량이 출하량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인증건수와 인증계획량의 변화 ■



출처: 2008년과 2010년은 정학균·장정경(2011) 자료(인증건수, 출하량)를 이용하고 최근(2013년 8월~2014년 7월)의 인증현황(인증건수, 인증계획량)을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최근 1년간 유기농식품 인증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인증건수는 최소 19건에서 최대 167건, 인증계획량은 최소 8천 톤에서 최대 2.3백만 톤으로 그 편차가 상당히 심한 편이다.

- 월별 인증건수는 대략 30~60건이지만 지난 12월 달에는 16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4년 1월부터 인증제로 단일화되기 때문에 생산자의 관심이 보다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 월별 인증계획량의 경우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는데, 2014년 3월에 약 1.2백만 톤, 4월에 2.3백만 톤에 비해 1월에는 8천 톤이다. 이는 두부류 및 묵류 1건에 대한 인증계획량이 약 1백만 톤(3월), 우유 및 유제품 1건의 인증계획량이 약 2.3백만 톤(4월)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 최근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월별 품질인증 실적(2013년 8월~2014년 7월) ■

(단위: 건, 천 톤)

구분	2013년					2014년						
	8월 ¹⁾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인증건수	19	28	45	57	167	45	36	46	44	38	62	60
인증계획량	11	238	87	484	75	8	15	1,182	2,323	362	7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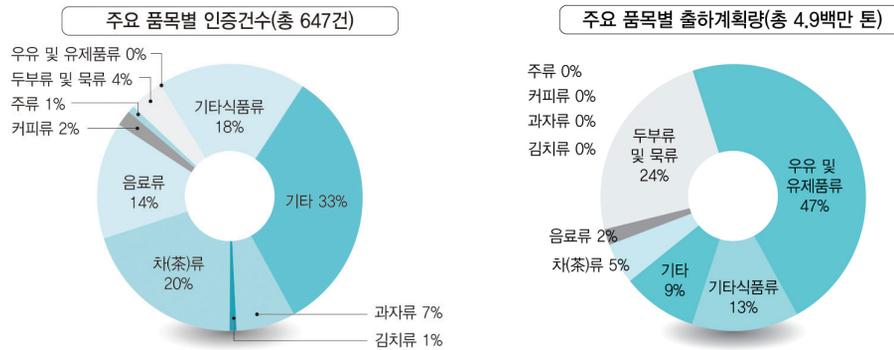
주: 8월 16일부터 인증자료임.

출처: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 ◆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최근 1년간의 유기가공식품 인증현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출하계획물량 기준 우유 및 유제품류 2.3백만 톤, 두부류 및 묵류 1.2백만 톤, 기타식품 64만 톤, 차(茶)류 26만 톤 수준이다.
- 인증건수 기준으로는 차(茶)류 128건, 기타식품 116건, 음료수 88건, 과자 45건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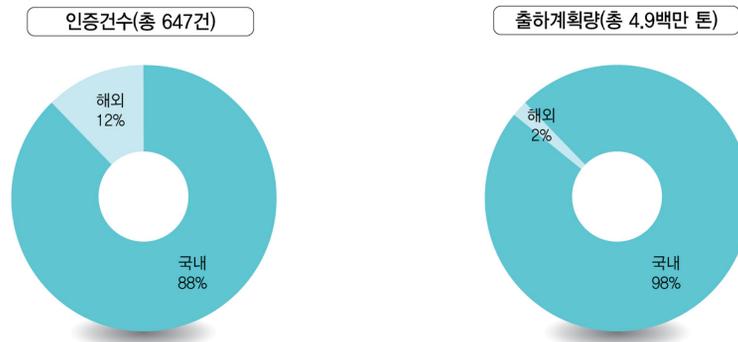
■ 최근 1년간(2013년 8월~2014년 7월) 주요 품목별 인증건수 및 출하계획량 비중 ■



출처: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 최근 1년간의 국내·외 유기농식품 인증현황 총 647건 중 국내인증 88%, 해외인증 12%이고, 출하계획량인 총 4.9백만 톤 중에는 국내인증 98%, 해외인증 2% 수준이다.
- 즉 해외인증의 건수 비중으로는 12% 정도를 차지하지만 실제 출하계획량 비중으로는 2%에 불과한 수준이다.

■ 최근 1년간(2013년 8월~2014년 7월) 국내외 유기농식품 인증건수 및 출하계획량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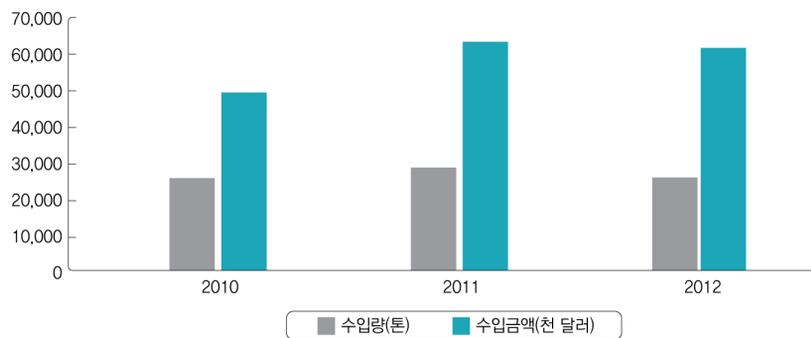


출처: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도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를 통하여 유기농식품의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약 25,473톤에서 2011년 28,716톤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2012년 25,496톤으로 감소하였다.

- 동 기간 동안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출하량 자료가 부재하여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에서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2008년 국내 출하량 1,748톤과 2012년 수입량을 비교하면 수입물량이 약 14.6배로 높은 수준이다.
- 수입액으로 살펴보면 2010년 약 5천만 달러(약 510억 원) 에서 2012년 약 6천 3백만 달러(약 644억 원)로 증가하였다.

■ 연도별(2010~12년) 유기가공식품 수입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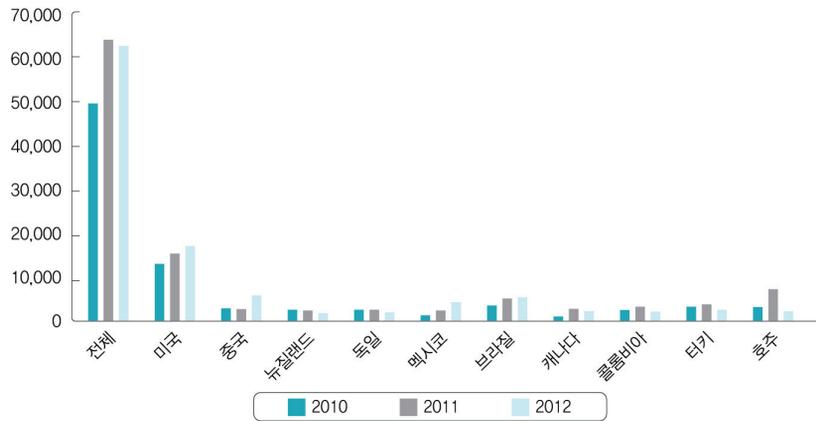


출처: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2011, 2012, 2013)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유기가공식품의 국별 수입금액은 미국, 중국, 브라질, 멕시코, 호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12년 유기가공식품의 수입금액을 국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약 1천7백만 달러로 가장 높고, 중국이 5백 80만 달러로 2번째로 높으며, 브라질이 5백 31만 달러로 3번째로 높다.
 - 이외에도 브라질, 멕시코, 터키, 호주, 콜롬비아, 캐나다 등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고 있다.
 - 국별 수입금액의 추세를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유기가공식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국별·연도별(2010~2012년) 유기농식품 수입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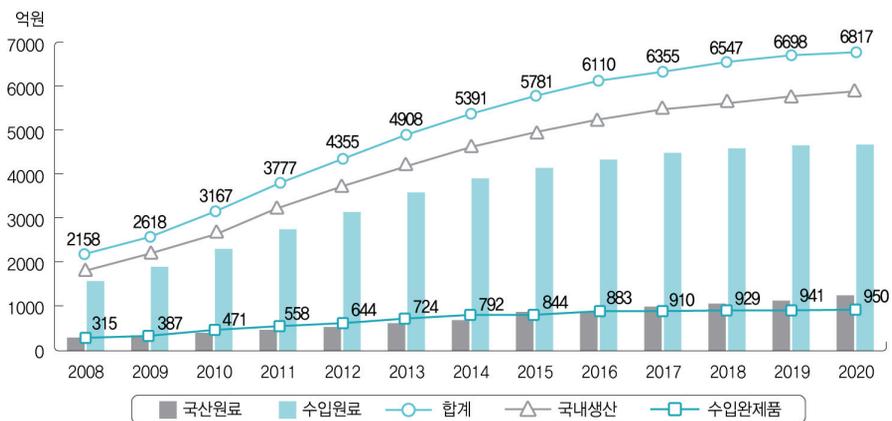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출처: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2011, 2012, 2013)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김창길 외(2011)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유기농식품의 규모는 2020년 경 약 6,817억 원으로 증가하고, 이 중 상당 부분이 수입 원료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의 유기농식품 시장 규모 전망 ■



출처: 김창길 외(2011) p.67 재인용.

- 2014년 4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식품을 인증하는 민간 기관이 총 16곳이며, 국내 및 해외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총 6곳, 국내만을 담당하는 기관은 7곳, 해외만을 담당하는 기관은 3곳이다.

■ 국내 유기농식품 인증기관 지정현황(2014년 4월 기준) ■

인증 기관명	인증지역
(주)한국농식품인증원	국내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국내, 해외
글로벌유농인 영농조합법인	국내, 해외
오씨케이(주)	국내, 해외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내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국내
건국에코써트인증원(주)	국내, 해외
(주)우리농인증원	국내
ACO(Australian Certified Organic)	해외
BCS(BCS ko-Garantie GmbH)	해외
(주)비씨에스코리아	국내
(사)제주농림수산식품인증센터	국내
(주)에코리더스인증원	국내, 해외
ECOCERT SA	해외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국내
Control Union Certifications	국내, 해외

출처: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2. 미국 및 중국의 유기농식품 시장 현황

1) 미국

● 미국 농림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유기식품 판매액은 2011년 257억 달러였으며, 2014년에는 약 348억 달러로 예상된다.⁵⁾

5) 2010년 기준 미국 유기식품 시장 규모가 약 234억 달러(약 23조 9천억 원)인데 반해 한국의 유기식품 시장 규모는 6,276억 원(김창길 외, 2011)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임.

■ 미국의 유기식품 시장 현황(2005~14년) ■

(단위: 10억 달러, %)

연도	과일 및 채소	유제품	음료수	포장 및 조리식품	빵과 곡물	스낵류	고기 및 생선	조미료	계
2005	5.37 (40.3)	2.14 (16.1)	1.66 (12.5)	1.63 (12.2)	1.36 (10.2)	0.56 (4.2)	0.26 (1.9)	0.34 (2.6)	13.31 (100)
2006	6.07 (39.0)	2.58 (16.6)	1.93 (12.4)	1.89 (12.1)	1.65 (10.6)	0.68 (4.4)	0.35 (2.2)	0.42 (2.7)	15.56 (100)
2007	6.93 (38.0)	3.08 (16.9)	2.30 (12.6)	2.16 (11.8)	1.95 (10.7)	0.84 (4.6)	0.48 (2.6)	0.52 (2.8)	18.27 (100)
2008	7.80 (37.9)	3.41 (16.6)	2.60 (12.7)	2.40 (11.7)	2.13 (10.4)	0.95 (4.6)	0.61 (3.0)	0.64 (3.1)	20.52 (100)
2009	8.66 (40.1)	3.37 (15.6)	2.59 (12.0)	2.50 (11.6)	2.21 (10.2)	1.97 (4.5)	0.62 (2.9)	0.68 (3.1)	21.59 (100)
2010	9.69 (41.4)	3.68 (15.7)	2.71 (11.6)	2.57 (11.0)	2.33 (9.9)	1.06 (4.5)	0.64 (2.8)	0.72 (3.1)	23.41 (100)
2011	10.84 (42.2)	4.03 (15.7)	2.92 (11.4)	2.77 (10.8)	2.48 (9.6)	1.16 (4.5)	0.72 (2.8)	0.78 (3.0)	25.71 (100)
2012E	12.15 (42.7)	4.31 (15.2)	3.20 (11.3)	3.02 (10.6)	2.67 (9.4)	1.33 (4.7)	0.85 (3.0)	0.89 (3.1)	28.41 (100)
2013E	13.55 (43.1)	4.66 (14.8)	3.51 (11.2)	3.33 (10.6)	2.90 (9.2)	1.52 (4.8)	0.99 (3.1)	1.00 (3.2)	31.44 (100)
2014E	15.06 (43.3)	5.07 (14.6)	3.84 (11.0)	3.68 (10.6)	3.16 (9.1)	1.72 (4.9)	1.14 (3.3)	1.12 (3.2)	34.80 (100)

주: 2012~14년은 추정치이고, 괄호는 비중임

출처: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using Data from Nutrition Business Journal
(<http://www.ers.usda.gov/topics/natural-resources-environment/organic-agriculture/organic-market-overview.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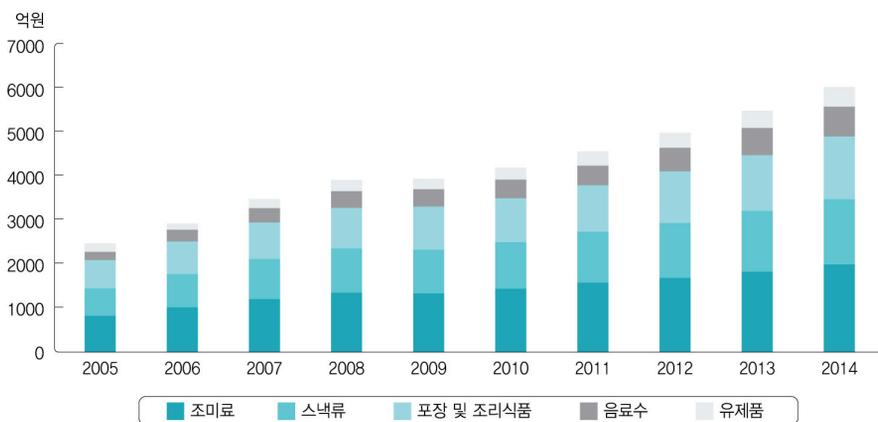
-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 과일 및 채소 43.3%, 유제품 14.6%, 음료수 11.0%, 포장 및 조리식품 10.6%, 빵과 곡물 9.1%, 스낵류 4.9%, 고기 및 생선 3.3%, 조미료 3.2%를 차지하고 있다.

- 미국의 유기식품 판매액 중 유제품, 음료수, 포장 및 조리식품, 스낵류, 조미료 등은 유기가공식품으로 볼 수 있는바, 2011년 시장규모는 약 117억 달러(약 11조 9천 억 원) 이고, 2014년은 약 154억 달러(약 15조 7천억 원) 규모이다.

- 빵과 곡물에도 유기가공식품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유기가공식품의 미국시장 규모는 조금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로 한국의 2010년 유기가공식품 시장규모가 약 3,102억 원⁶⁾임을 고려할 때, 2010년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시장 규모 107억 달러(약 10조 9천억 원)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시장 현황(2005~14)년 ■

(단위: 10억 달러)



주: 2012, 2013, 2014년은 추정치임.

출처: 미국 USDA

- 미국의 유기식품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약 6.7억 달러 수준에서 2013년 13.8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로 최근 2년 만에 2배로 증가하였다.
- 특히 신선채소, 과일, 견과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외에도 와인, 맥주, 기타 음료와 식물성식용유의 수입도 증가하였다.

6) 김창길 외(2011)에서 닐슨컴퍼니코리아의 조사결과를 통하여 추산한 수치임.



■ 미국의 유기식품 수입현황(2011~13년) ■

(단위: 천 달러)

주요 유기식품	2011년	2012년	2013년
채소, 과일, 견과류	37,521	42,281	441,434
커피, 차, 소스(생강)류	562,987	317,295	304,995
곡류와 빵류	25,121	34,949	96,720
오일종자	41,790	90,201	112,727
식물성식용유	-	-	165,608
설탕 및 과자류(꿀)	-	11,196	13,231
와인, 맥주, 기타 음료	-	-	242,029
유기식품 수입총액	667,420	495,923	1,376,742

출처: USDA-FAS Trade Database(<http://apps.fas.usda.gov/gats/default.aspx>)

◆ 미국은 2011년부터 유기식품에 대한 HS 코드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전에는 집계되지 않던 품목들이 증가하면서 수입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011년도에는 온실재배 유기농 신선파프리카류(HS 0709604015), 온실 이외 재배 유기농 신선파프리카류(0709604065), 유기농 아보카도(HS 0804400020), 유기농 사과(HS 0808100045), 유기농 배(HS 0808204015), 유기농 블루베리(HS 0810400026), 유기농 커피(HS 0901110015), 발효되지 않은 유기농 녹차(HS 0902209015), 유기농 쌀(HS 1006309015), 유기농 콩(HS 1201000045)으로 대부분 신선농산물 위주였다.
- 2012년도에는 유기농 천연꿀(HS 0409000005), 유기농 모과⁷⁾(HS 0808402015)가 추가되었고, 2013년부터는 유기농 마늘(HS 0703200005), 유기농 아몬드(HS 0802120005), 유기농 바나나(HS 0803900025), 유기농 망고(HS 0804504045), 유기농 생강(HS 0910110010), 유기농 아마씨(HS 1204000025), 유기농 올리브오일(HS 1509102015), 유기농 탄산 와인(HS 2204100065), 유기농 적포도주(HS 2204215035), 유기농 백포도주(HS 2204215050), 유기농 사료용 옥수수(HS 1005902015) 등이 추가되었다.

7) qui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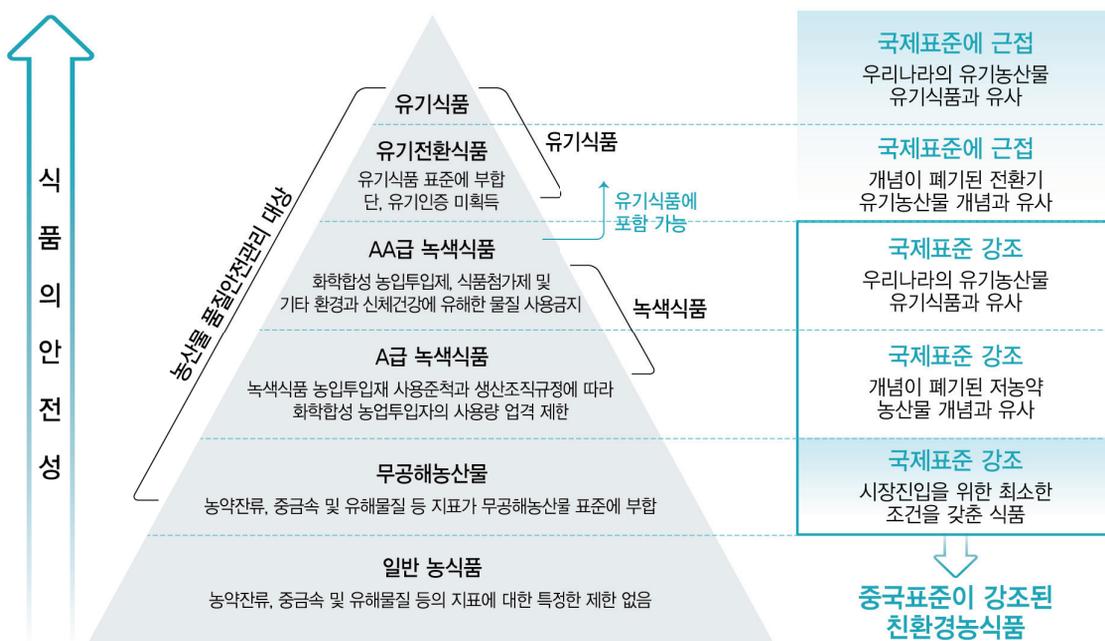
- 이외에도 유기가공식품 수출품목도 2011년부터 HS 코드화가 시작되었는데, 대부분 유기농 감자, 유기농 체리, 유기농 양파, 유기농 브로콜리 등 신선 농산물 위주이다.

2) 중국

● 중국의 ‘유기식품’은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포함한 것으로 국제표준에 근접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국무원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가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 전형진(2012)에서 밝힌바와 같이 중국의 ‘유기식품’은 식품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상위단계의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대상이며, 다른 친환경 농식품에 비하여 ‘중국표준’보다는 ‘국제표준’에 근접해 있는데, 이는 유기식품의 수출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로, 중국은 농식품을 일반 농식품, 무공해 농식품, A급 녹색식품, AA급 녹색식품, 유기전환식품, 유기식품 순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유기식품’과 ‘유기전환식품’은 국제표준에 근접하고, 이외의 녹색식품 등은 자국 표준에 맞추고 있다.

■ 농식품 안전성 기준에 의한 중국 친환경농식품 구분 ■



출처: 전형진(2012, p.4)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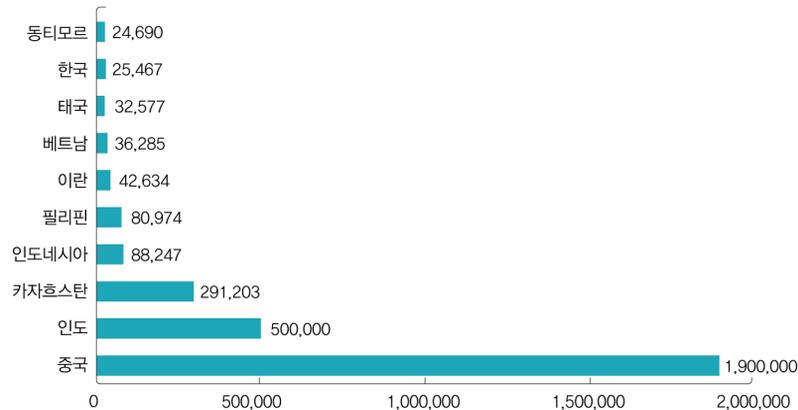
◆ 중국은 2014년 4월 1일부터 지난 2013년 11월에 공포된 ‘유기제품인증관리방법’을 시행하였는데, 특히 ‘유기제품수입’ 부분을 추가하여 수입되는 유기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하였다.

- 중국으로 수입되는 유기식품은 중국 국가 인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유기 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지정기구를 통하여 인증을 받은 후, 중국의 유기농 인증마크를 사용해야 한다.
- 2014년 8월 현재, 한국에서 인증 받은 유기 표시를 중국 내에서 유통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장라벨에서 유기인증 표기 없이 중국 현지에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유기제품으로 수출하고자 한다면 중국의 유기인증기구를 통하여 제품을 인증 받은 후 수출해야 한다.
- 참고로, 중국에서 유기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기구가 약 20여개 있으며, 현재까지 중국 외에서 중국 국내 유기제품에 대한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는 없는 상황이다.
- 향후 한국은 중국 국가인감위에 한국 유기농 인증기구와의 동등성 인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중국과 상호 동등성 협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세계유기농협회(IFOAM)에서 발간하는 자료에 의하여 중국 유기농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2012년 약 1.9백만 ha로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월등히 많은데, 이는 아시아에서 유기가공식품의 생산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권에서 가장 많은 유기농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인도로 50만 ha이고, 다음으로는 카자흐스탄 약 29만 ha, 인도네시아 약 8만 8천 ha, 필리핀 약 8만 ha 등이다. 한국은 약 2만 5천 ha의 유기농 재배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 아시아의 상위 10개국의 유기농 재배면적(2012년, ha) ■



출처: FIBL and IFOAM (2014, p.184)에서 재인용

● 중국의 ‘유기식품’ 시장규모는 공식적인 연구결과가 부재하여 파악하기 어렵지만, ITC(2011)에서 Zeijang Zhou(2010)를 인용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약 75억 위안(약 1조 2,452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 한국의 2010년 유기식품 시장규모 6,276억 원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 2009년 기준 중국의 ‘유기식품’ 수입 규모는 약 최소 3백만~8백만 달러(약 81억 원)에서 최대 2천만 달러(약 200억 원) 수준이고, 이 중 절반은 가공용으로 활용되며, 절반은 시중에 판매된다(ITC, 2011).

● 수입되는 유기가공식품은 주로 유제품과 가공식품인데, 특히 아기들을 위한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3.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과 의미

1)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의 주요 내용

● 정부는 2014년 7월 1일, 미국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 동등성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7월 1일자 보도자료).



- 상호동등성 인정 제도는 양국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서로 동일한 수준이라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유기농인증로고 】

한국 인증로고	미국 인증로고	중국 인증로고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① 유기가공식품의 인정 범위, ② 상호 인증 표시, ③ 수입인증서 첨부, ④ 인증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심사, ⑤ 제도 변경시 상호 통지, ⑥ 현장 평가 허용 및 협력, ⑦ 정보 교류, ⑧ 유기작업반 설치 및 연례 공동 회의 개최이며,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으로 수출 가능한 유기가공식품 인정 범위로는 유기 원재료 95% 이상 함유, 한국 내에서 최종 가공, 한국의 유기 인증 획득, 항생제 사용 가축에서 유래한 원재료 비함유, 금지농약·방사선 조사·유전자변형생물체 미함유 제품이며, 잔류검사 및 후속조치는 미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 상호인증 표시는 미국 농무부(USDA) 유기 표시 요구사항에 따라 표시하되, 한국과 미국의 인증로고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인증기관으로부터 미국 유기인증프로그램의 수입증명서(NOP 2110)를 발급받아야 한다.
- 한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은 대표기관으로 ISO 17011을 적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인증기관에 대한 주시적인 심사를 실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인증기관의 인정지위에 관한 변경사항, 관련 지침 및 개정 사항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미국 농무부에 통지한다.
- 미국의 사전통지에 의해 미국 농무부 공무원이 한국에서 주기적인 현장평가를 할 수 있으며, 생산시설 및 농장까지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수행하도록 허용 가능한 범위까지 협력해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수출된 한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종류와 수량, 정부가 파악한 부적합 유형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시정 노력, 한국의 유기제도 인증기관 목록을 미국 농무부의 농업마케팅청(AMS)에 제공한다.
- 양 정부는 유기식품 교역 촉진과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이 협정의 운영 실태 검토, 인정범위 논의, 확인된 기술적 사안에 대한 진척도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기작업반을 구성하고 연례 회의를 개최한다.

2) 의미와 과제

- ◆ 동 협정은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으로, 우리 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EU 등 다른 국가와의 협정 체결로 우리의 유기가공식품 교역시장이 보다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국가간 상호 동등성 협정을 통하여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유통비용(현지 인증비용 등)이 상당부분 감소되는 만큼 양국의 소비자 후생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
 - 수입 유기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최종 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의 미국 수출이 미국의 유기인증과 함께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성장기회가 확대되었다.
- ◆ 한편, 미국은 캐나다(2009년 6월 30일), EU(2012년 6월 1일), 일본(2014년 1월 1일) 다음으로 한국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하였는바, 미국 유기가공식품의 국제경쟁력이 보다 증대될 것이다.
 - 국내 소비자 수요에 걸맞은 미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수입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 유기가공식품의 상품 종류가 보다 다양해질 것이며, 동시에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에서 미국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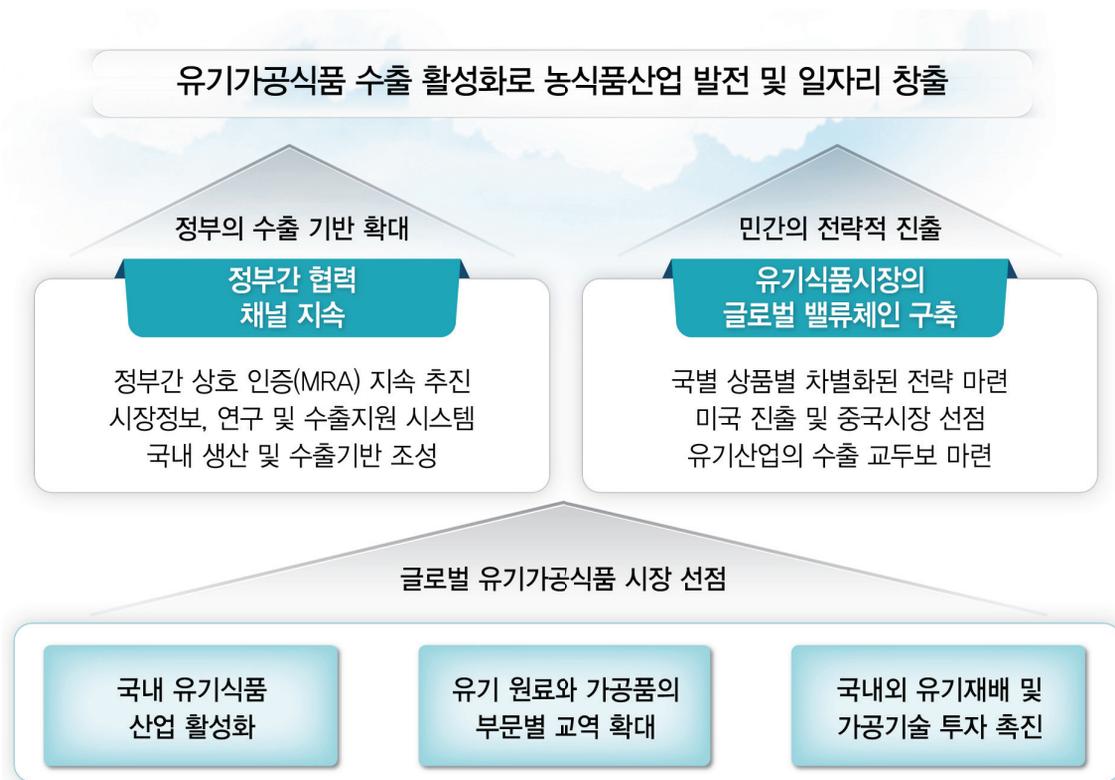


- 국내에서는 동일한 유기 가공식품이라도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 정부는 향후 유기작업반을 통하여 미국 유기 가공식품 시장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국내 유기 가공식품 생산업체들의 수출수요를 파악하여 이들이 관련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상품교역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것은 상당 부분 정보 부족과 이를 이용하기 위한 행정 부담이었는데, 상호동등성 인증을 통한 수출 확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추가 노력이 요구된다.
- ◆ 기업은 상호동등성 협정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 유기 가공식품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세계시장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
 - 국내에서 생산된 유기농축산물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수입 유기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이용하여 수출 물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품목별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미국 유기식품 시장의 급성장에 편승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이는 향후 국제적인 유기 가공식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다른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4. 유기 가공식품의 수출활성화 전략: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 ◆ 국내 유기식품 산업 활성화, 유기원료 및 가공품의 교역 확대, 국내·외 유기재배 및 가공기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유기 가공식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유기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기반을 확대하고 민간의 전략적 진출 도모가 필요하다.

■ 유기농식품의 수출 활성화 전략: 정부의 수출기반 확대와 민간의 전략적 진출 ■



출처: 저자 작성

1) 정부의 유기농식품의 수출 기반 확대

- 정부의 유기농식품 수출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기인증 제도에 대한 정부간 협력을 통하여 필요시 국가간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을 추진하고, 급성장하는 유기식품 시장에 대한 정보와 연구 및 수출 지원시스템을 갖추어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및 수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가. 유기농식품의 상호 동등성 협정의 안정적 유지와 추가 협정 추진

- 우리는 지난 7월 1일부터 한-미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이 발효되었는 바, 향후 유기작업반을 통하여 제도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하고, 동시에 EU, 캐나다, 일본, 나아가 중국 등과 유기농식품에 대한 상호 동등성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
- 기체결된 미국과의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유기농



공식품의 국내유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국내 인증 유기농식품의 미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 하지만 국내 유기농식품의 생산여건이 상대적으로 미숙한 편이기 때문에 미국 유기농식품에 대한 품목별 시장조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수출이 가능한 국내 유기농식품의 생산 및 수출 여건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야 한다.
- 정부는 유기농작업반을 통하여 미국과 공동으로 유기농식품의 제도분야에 협력하면서도 미국시장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빨리 확보하여 국내 농업부문에 혜택이 갈 수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상호인정협정은 유기농식품에 대한 인증비용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수출의 모멘텀(momentum)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급증하는 중국의 유기농식품 시장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 일례로 중국에서 고품질의 아기용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한국산 유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으므로, 유기농 유제품을 이용하여 전략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동시에 관련 품목을 증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 2014년 말까지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농업 생산부문의 피해와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유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할 때 유기농 유제품에 대한 정부간 협력 사업은 매력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최근(2014년 4월) 중국의 유기농식품 수입 규정이 한층 강화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중국 국가인감위에 한국 유기농 인증기구와의 동등성 인정을 고려할 수 있으며, 나아가 유기농식품에 대한 국가 간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나. 유기농식품의 국내·외 시장정보, 연구, 수출지원 시스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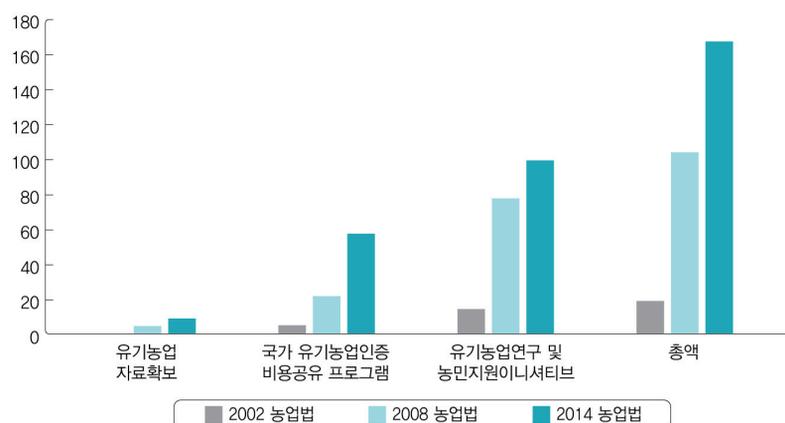
- 유기농식품에 대한 국내 인증, 생산, 유통 및 수출입 현황, 수출 애로사항 조사, 소비자 인식 조사, 정부의 지원 제도, 국제적인 인증제도와 획득 관련 정보, 국제 유기농 식품 시장현황 등 총체적인 정보 교류 시스템과 연구지원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 일례로, 미국은 ‘Organic Agriculture’를 통하여 국가유기농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 하에 유기농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교역현황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최근 유기식품에 대한 HS 코드화⁸⁾로 유기식품 교역량도 집계하기 시작하였다.

-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하여 유기농에 대한 101가지 블로그, 유기 인증 절차, 유기 농업인에 대한 소개, 작물재해보험 등도 도입하였다.
- 2002년 농업법을 통하여 유기농업을 지원하기 시작한 미국은 2008년 약 1억 달러의 비용을 지원했으며, 2014년부터는 약 1억 6천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유기농업 관련 자료 구축에 5백만 달러, 미국 국가유기농프로그램의 기술시스템과 자료 업그레이드에 5백만 달러, 유기농업에 대한 연구 및 농민 지원 서비스에 1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 또한 유기농업인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유기인증비용의 최대 75%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유기농업인증 비용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당 최대 750달러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 이외에도 작물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미국의 16개 주에서는 매년 1.5백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된 연방작물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기인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미국의 2002, 2008, 2014 농업법에 의한 유기농업 지원액 ■

(단위: 백만 달러)



출처: 미 농무부 Organic Agriculture 홈페이지 (<http://www.ers.usda.gov/agricultural-act-of-2014-highlights-and-implications/organic-agriculture.aspx>)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함.

8) 2010년 1월, 23개 수출 유기식품, 20개 수입 유기식품 추가, 2012년 1월 4개 수출 유기식품, 3개 수입 유기식품 추가, 2013년 1월, 16개 수입 유기식품을 HS 코드화함.



- 한편, EU는 국제무역센터(ITC)를 통하여 중국의 유기식품에 대한 시장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미국도 중국 유기농식품 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일례로 2014년 7월 1일자의 미국 농림부(FAS)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2014년 4월 1일부터 유기 원재료가 최소 95% 이상 함유되어야 제품에 'organic' 표시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 한국도 국내·외 급변하는 유기농식품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적인 영역에서 생산하고 이를 관련 업체 및 전문가들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특히 수출 농업인들이 정부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한편 정부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수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기존의 제도 하에서 유기농식품 수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 정부의 일반적인 농식품 수출 지원 제도는 크게 해외 시장개척 지원, 농축산물 판매촉진 지원, 우수 농식품 구매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유기농식품은 가격경쟁력 보다는 고품질의 식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국내 유기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은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며, 대부분 내수 판매 위주이다.
- 해외 유기인증에 대하여 일부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수출실적으로 얼마만큼 이어졌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한편 미국의 유기농식품이 초기에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유기농식품 분야에서 수입되어 국내 유기농식품 시장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 질 것이다.
- 정부는 최근 김치, 삼계탕, 유제품 등 농수산 전통식품과 가공식품을 수출 첨병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고부가가치 기능성 쌀의 수출계획도 발표하였다. 사업성은 있지만 담보능력이 취약한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하여 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수출보험지원 한도도 올릴 계획이다.
- 따라서 아직까지 생산 및 수출기반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유기농식품도 농식품 수출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 이는 유기농식품에 대한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

라 정부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확대’와 ‘농식품 수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 유기가공식품 수출을 위한 중장기 국내 생산 및 수출 기반 조성

● 유기가공식품의 중장기적인 수출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일반농식품 수출지원 제도와 병행하여 수출국의 유기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과 함께 실제 수출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최근 1년 동안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연간 인증계획량이 무려 4.9백만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일부 기업(예: ‘범산농장’의 우유 및 유제품 약 2.3백만 톤, ‘강릉초당두부’의 두부류 약 1.2백만 톤, 양원농장회사법인의 차(茶)류 24만 톤 등)를 중심으로 유기가공식품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소수의 품목에 그치고 있다.
- 또한 총 647건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진수 중 약 12%가 해외에서 이루어졌는데, 주요 국가로는 터키, 브라질, 뉴질랜드, 호주, 콜롬비아, 미국(오리건주), 태국, 중국 등이고, 주요 품목으로는 기타식품류와 식용유지류, 설탕, 커피, 올리고당류, 주류, 음료류, 차(茶)류 등이다. 즉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품목의 유기가공식품 수입이 예상된다.
- 최근 1년간의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현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미국 유기가공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해외 유기가공식품의 수입의 급증이 예상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일부 소수의 품목을 중심으로 내수용 유기가공식품 생산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 따라서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수출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다양한 생산기반을 점진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수출과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현재 친환경농업단지와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사업을 통하여 유기농축산업의 생산능력을 제고시키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이 참여하는 수출형 첨단식품기술 융·복합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다양한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생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2) 민간의 전략적 진출 도모

◆ 민간의 유기식품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별·상품별 차별화된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미국 진출을 통하여 중국시장 선점의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유기산업의 수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유기식품시장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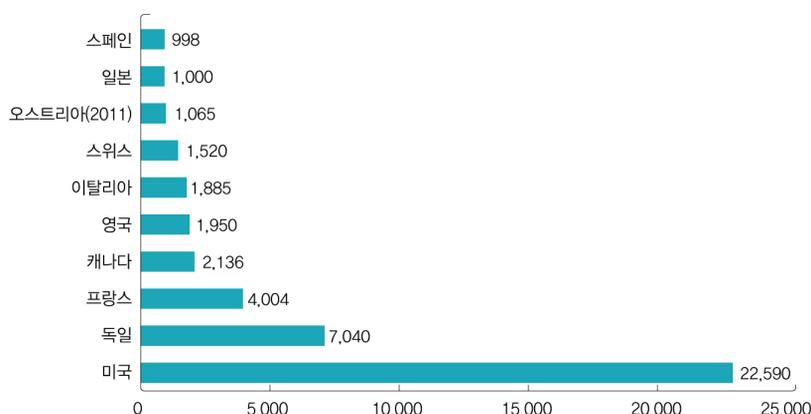
가. 국별·상품별 차별화된 수출 전략 마련

◆ 기업들은 급증하는 전 세계의 유기가공식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유기가공식품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 기반과 함께 대상국가의 수요층에 따른 차별화된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유기가공식품의 시장 규모는 2014년 경 약 5,391억 원⁹⁾인 반면, 미국의 유기가공식품은 2014년 약 154억 달러(약 15조 7천억 원)이고, 중국의 유기식품시장도 2010년에 이미 한국의 2배 수준을 능가하였다.
- FiBL and IFOAM(2014, p.23)에 의하면 2012년 유기농의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638억 달러(약 65조 원)로 1999년 152억 달러보다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미국 시장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독일과 프랑스 순이다.

■ 유기식품의 전 세계 10대 시장과 규모(2012년) ■

(단위: 백만 유로)



출처: FiBL and IFOAM (2014), p.68 재인용.

9) 김창길 외(2011), p.67

- 일례로, ITC(2011)에 의하면 중국 유기식품 소비자의 약 40%가 화이트칼라이고, 약 10%는 어린이용 유기식품 및 유제품 등에 관심이 높은 가정이고, 약 10%는 노인들과 함께 살면서 건강 문제에 관심이 높은 가족이고, 약 10%는 중국계 대만인·홍콩인(2009년 기준 약 1백만 명)이며, 약 10%는 정부 관료, 약 7%는 중국 거주 외국인, 약 5%는 해외에서 유기농을 경험한 세대(약 50만 명), 약 3%는 유기농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로 파악하였다.
- 이처럼 기업들은 해외 유기식품의 소비자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유기가공식품의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필요하다면 정부의 시장조사에 대한 협력을 구해야 한다.
- 현지의 유기가공식품 관련 박람회에 참여하여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례로 중국의 국제유기 및 녹색식품 산업 엑스포(China International Organic and Green Food Industry Expo), 홍콩의 자연 및 유기제품 아시아(Natural & Organic Products Asia), 미국의 동부지역 자연제품 엑스포(Natural Products Expo East), 북미의 지속가능한 식품회담(Sustainable Foods Summit North America), 2015 IFOAM 세계유기농대회 등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의 해외 유기식품 박람회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나. 미국 진출 및 중국시장 선점

◆ 기업들은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협정을 계기로 미국에 진출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미국은 이미 캐나다, 일본, EU와 유기식품에 대한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 2011년부터 미국이 도입하고 있는 HS 코드에 맞는 유기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적절한 4P(가격, 상품, 시장, 광고) 전략을 통하여 품목별 미국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ITC(2011)의 보고서에 의한 중국 유기식품 진출을 위한 4P 전략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4P 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

4P	전략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으로 인증 받는 유기인증 마크 부착 · 중국 유기인증 마크 부착 필요 · 중국인 선호도에 적합한 품질과 매력적인 포장 필요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량 공급 · 채소류, 쌀, 곡류, 의료용 식물 등은 이미 중국의 로컬상품이 장악함. · 환경이슈와 관련하여 우수한 제품이미지 확보 필요 · 중국 검역당국의 식품안전 규정에 적합 · 중국 내 수송과 배분 지체에 대비한 유통기한 고려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유기농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가격에 민감함. · 대량생산 품목의 가격과 어느 정도 비슷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된 가격 · 관세 및 통관 등의 비용 고려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제품은 큰 슈퍼마켓에서, 프리미엄 유기제품은 전문 상점에서 판매 · 유통업자들이 대부분 지역마다 운영 · 적합한 현지의 수입 및 유통업자를 파트너로 삼는 것이 중요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의 특정 영양성분이나 기능적 가치에 대한 홍보에 주력 · 원산지의 환경 및 지속가능한 생태시스템에 대한 홍보 주력 · 수출국의 특징을 담고 있는 깔끔하고 매력적인 포장

출처: ITC(2011)

다. 유기식품산업의 수출 교두보 확보로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과 중국 유기식품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유기식품시장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한다.

-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대규모 유기원료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브라질, 미국 등으로부터 유기원료를 수입한 후 유기가공식품으로 가공하여 수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 일례로 2012년 중량기준으로 살펴보면, 유기설탕은 브라질로부터, 유기농 바나나는 필리핀으로부터, 유기 과채류 가공품은 미국으로부터, 유기농 침출차는 중국으로부터, 유기농 밀은 호주로부터 수입이 이루어졌다.
- 또한 한국은 유기축산을 위한 유기사료의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유기축산 가공식품을 위한 유기원료는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 따라서 유기가공식품 수출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품목별 유기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해외 거점 생산지역을 확보하고, 국내에서 고품질의 가공기술을 통하여 유기가공식품화를 통하여 수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 글로벌 유기식품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 진출과 중국 시장 선점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국제 금융시장

1. 국제 외환시장
2. 국제 상품시장

1. 국제 외환시장

● 주요 통화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회복세, 조기 기준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연중 최고 수준으로 상승

- 미 연준(Fed)이 7월 FOMC에서 노동력 활용 저조를 이유로 상당기간 저금리 유지의 필요성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2/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4.0% (연율) 성장하는 등 양호한 경기회복세를 보이면서 조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달러화 가치는 상승하였다.
-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주요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를 시행한 가운데, 유럽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 디플레이션 위험 등으로 하락하였다.
 - 유로존의 7월 소비자신뢰지수는 -8.4로 4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었고, 6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3% 감소하였으며,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대비 0.4%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조되었다.
- 달러 대비 일본 엔화 가치는 대외 지정학적 불안 확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달러화 강세, 일본 2/4분기 GDP 성장률 부진(-6.8%, 전기대비 연율) 등으로 하락했다.

● 원/달러 환율은 정부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6월 경상수지 흑자 기록, 외국인 주식 순매수 지속 등으로 하락

■ 주요 환율 동향 ■

구분	2014.8.15 (현재)	2014.7.15 (1개월전)	2013.8.15 (1년전)	전월대비 상승률	전년대비 상승률
달러 인덱스 ¹	81.424	80.390	81.181	1.3%	0.3%
달러/유로	1.3401	1.3568	1.3347	-1.2%	0.4%
엔/달러	102.36	101.68	97.36	0.7%	5.1%
위안/달러	6.1483	6.2072	6.1125	-0.9%	0.6%
원/달러	1021.2	1027.4	1118.7	-0.6%	-8.7%

주: 1. 유로,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6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것(1973년 3월=100)

출처: Bloomberg.



2. 국제 상품시장

◆ 국제유가는 이라크 내전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와 같은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도 공급 안정으로 하락

- 이라크 및 우크라이나 등에서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라크 통합정부 구성 지연과 수니파 반군의 이슬람국가 선포, 크루드족의 독립 추진으로 이라크 내전이 장기화되고 있다.
 -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이 미국의 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에 동참할 것으로 합의한 후, 러시아는 이들 국가로부터 농산물, 식품 수입 금지 등 보복 조치를 단행하였다.
-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 리비아의 원유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OPEC 원유 생산량이 늘어난 반면, 세계 석유수요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등 수급 측면에서 공급이 우위를 점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하였다.
 - 내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7월 일평균 석유 수출량은 전월보다 19만 배럴 증가한 244만 2,000배럴을 기록했다.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7월 OPEC 원유 생산량은 사우디, 리비아 등의 생산 증가로 일평균 3,044만 배럴로 늘어나 지난 5개월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였다(8/12).
 - 반면, 2014년 세계 석유수요 전망은 2/4분기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일평균 100만 배럴로 하향 조정되었다.

■ 국제유가 동향 ■

(단위: \$/b)

구분	2014.8.15(현재)	2014.7.15(1개월전)	전월대비 상승률
WTI유	97.29	99.91	-2.6%
Dubai유	100.96	104.49	-3.4%
Brent유	102.21	104.57	-2.3%

출처: Bloomberg.

◆ 주요 곡물 가격 중 옥수수과 대두 가격은 미국 생산량 전망 상향 조정으로 하락한 반면, 소맥 가격은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불안 확대로 상승

- 소맥 가격은 작황호조, 미국 및 세계 소맥 생산량 전망 상향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군사 충돌 소식에 상승하였다.
 - 미 농무부 경작 보고서(Crop Progress)에 따르면, 8월 10일 기준 미국의 겨울 밀 수확률은 95%로 5년 평균인 90%를 웃돌았으며, 봄 밀 작황은 “good-excellent”로 평가된 비중이 70%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8/11).
 - 미 농무부는 8월 세계곡물수급전망 보고서(WASDE)에서 2014/15년도 미국 및 세계 소맥 생산량을 각각 20억 3,000만 부셀과 7억 1,609만 톤으로 전월에 비해 상향 조정하였다(8/12).
 -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 차량이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으로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흑해 연안의 공급 차질 우려감이 고조되어 소맥가격이 상승하였다(8/15).
- 옥수수과 대두 가격은 작황이 개선된 가운데 미국 생산량 전망 상향 조정으로 하락하였다.
 - 미 농무부에 따르면, 8월 10일 기준 옥수수과 대두 작황은 good-excellent로 평가된 비중이 각각 73%, 70%에 이르러 전년의 64%를 크게 웃돌았다(8/11).
 - 또한 미 농무부는 2014/15년도 미국 옥수수과 대두 생산량을 각각 140억 3,200만 부셀과 38억 1,600만 부셀로 상향 조정하였다(8/12).

■ 세계 주요 곡물 가격 동향 ■

(단위: ¢/bu)

구분	2014.8.15 (현재)	2014.7.15 (1개월전)	전월대비 상승률
소맥	551.3	537.8	2.5%
옥수수	365.6	374.0	-2.2%
대두	1102.5	1180.5	-6.6%

주 : 근월물(최근 선물) 기준

출처 :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Ⅲ . 최근 주요국의 검역 및 수입제도 변경 사항

1. 최근 검역제도 변경 사항
2. 최근 수입제도 변경 사항

1. 최근 검역제도 변경 사항

◆ 미국, 농식품 잔류농약 허용 한계치 WTO에 통보(2014. 4. 22)¹⁰⁾

- 미국은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FDCA)’에 따라 농식품의 농약 잔류허용 한계치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2014년 4월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 미국 환경 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농약 잔류허용 한계치 규정이 제정될 때마다 이를 WTO에 통보하고 있다.

■ 미국 주요 농식품의 농약 잔류허용치 규정 ■

품목	농약	Parts per million (ppm)	발효일자
밀(grain)	Fluoxastrobin	0.15	2014. 4. 11
우유	Fluoxastrobin	0.03	2014. 4. 11
우유(fat)	Fluoxastrobin	0.75	2014. 4. 11
콩(meal)	Imazapyr	4.5	2014. 4. 9
콩(seed)	Imazapyr	4.0	2014. 4. 9
가지	Metaflumizone	1.5	2014. 4. 4
후추	Metaflumizone	1.5	2014. 4. 4
토마토	Metaflumizone	0.60	2014. 4. 4
토마토 페이스트	Metaflumizone	1.2	2014. 4. 4
콩(seed)	Imazapic	0.40	2014. 4. 4
아몬드	Forchlorfenuron	0.01	2014. 4. 2
아몬드 껍질	Forchlorfenuron	0.15	2014. 4. 2
체리(sweet)	Forchlorfenuron	0.01	2014. 4. 2
배	Forchlorfenuron	0.01	2014. 4. 2
피스타치오	Forchlorfenuron	0.01	2014. 4. 2
자두(prune)	Forchlorfenuron	0.01	2014. 4. 2
소의 사료	Clomazone	0.05	2014. 4. 2
완두	Clomazone	0.05	2014. 4. 2

자료: Federal Register, Volume 79, Number 63, 65, 68, 70

10) G/SPS/N/USA/2659, G/SPS/N/USA/2657, G/SPS/N/USA/2655, G/SPS/N/USA/2652, G/SPS/N/USA/2651, G/SPS/N/USA/2650



◆ EU, 농식품 MRLs 규정 개정 초안 WTO에 통보(2014. 4. 4)¹¹⁾

- EU는 농식품에 대한 농약 최대 잔류 수준(Maximum residue levels; MRLs) 개정안 초안을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 동 초안은 유럽의회 및 위원회의 '규정 (EC) No 396/2005' 부속서 II, III, V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품목별, 농약별 MRLs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 EU 주요 농식품의 농약 MRLs 개정 초안(1) ▮

(단위: mg/kg)

	Benfuracarb		Carbaryl		Carbofuran		Carbosulfan		Furathiocarb		Procymidone		Profenofos	
	현재	개정	현재	개정	현재	개정	현재	개정	현재	개정	현재	개정	현재	개정
오렌지	0.02	0.01	0.01	0.01	0.5	0.01	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아몬드	0.05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사과	0.02	0.001	0.01	0.01	0.01	0.001	0.01	0.001	0.01	0.001	0.01	0.01	0.01	0.01
바나나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감자	0.02	0.001	0.01	0.01	0.01	0.001	0.01	0.001	0.01	0.001	0.01	0.01	0.01	0.01
당근	0.02	0.002	0.01	0.01	0.01	0.002	0.01	0.002	0.01	0.002	0.01	0.01	0.01	0.01
마늘	0.05	0.002	0.02	0.02	0.02	0.002	0.02	0.002	0.02	0.002	0.02	0.02	0.02	0.02
양파	0.05	0.002	0.02	0.02	0.02	0.002	0.02	0.002	0.02	0.002	0.02	0.02	0.02	0.02
토마토	0.02	0.002	0.01	0.01	0.01	0.002	0.01	0.002	0.01	0.002	0.01	0.01	10	10
후추	0.02	0.002	0.01	0.01	0.01	0.002	0.01	0.002	0.01	0.002	0.01	0.01	0.01	0.01
스위트콘	0.02	0.002	0.01	0.01	0.01	0.002	0.01	0.002	0.01	0.002	0.01	0.01	0.01	0.01
보리	0.02	0.01	0.5	0.5	0.02	0.01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옥수수	0.02	0.01	0.5	0.5	0.02	0.01	0.05	0.01	0.01	0.01	0.01	0.01	0.01	0.01
Tea	0.1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커피콩	0.1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생강	0.1	0.05	0.1	0.1	0.05	0.05	0.1	0.05	0.05	0.05	0.05	0.05	0.05	0.05
슈거캔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우유	0.02	0.001	0.05	0.05	0.01	0.001	0.01	0.001	0.01	0.001	0.01	0.01	0.01	0.01
달걀	0.02	0.01	0.05	0.05	0.01	0.01	0.05	0.01	0.01	0.01	0.01	0.01	0.02	0.02
꿀	0.02	0.05	-	0.05	0.01	0.05	-	0.05	0.01	0.05	0.01	0.05	0.01	0.05

http://members.wto.org/cnattachments/2014/spseec/14_1788_00_e.pdf

11) G/SPS/N/EU/71, G/SPS/N/EU/69

| EU 주요 농식품의 농약 MRLs 개정 초안(2) |

(단위: mg/kg)

	Asulam		Cyanamide		Dicloran		Flumioxazine		Flupyr-sulfuron -methyl		Picolinafen		Propisochlor	
	현재	개정	현재	개정	현재	개정	현재	개정	현재	개정	현재	개정	현재	개정
오렌지	0.5	0.05	0.05	0.01	0.1	0.01	0.05	0.02	0.02	0.02	0.05	0.01	0.01	0.01
아몬드	0.5	0.1	0.05	0.01	0.1	0.01	0.05	0.05	0.02	0.02	0.05	0.01	0.01	0.01
사과	0.5	0.05	0.05	0.01	0.1	0.01	0.05	0.02	0.02	0.02	0.05	0.01	0.1	0.01
바나나	0.5	0.05	0.05	0.01	0.1	0.01	0.05	0.02	0.02	0.02	0.05	0.01	0.01	0.01
감자	0.05	0.05	0.05	0.01	0.1	0.01	0.05	0.02	0.02	0.02	0.05	0.01	0.1	0.01
당근	0.5	0.05	0.05	0.01	0.1	0.01	0.05	0.02	0.02	0.02	0.05	0.01	0.01	0.01
마늘	0.5	0.05	0.2	0.01	0.5	0.01	0.05	0.02	0.02	0.02	0.05	0.01	0.01	0.01
양파	0.5	0.05	0.2	0.01	0.2	0.2	0.05	0.02	0.02	0.02	0.05	0.01	0.1	0.01
토마토	0.5	0.05	0.05	0.01	0.3	0.01	0.05	0.02	0.02	0.02	0.05	0.01	0.01	0.01
후추	0.5	0.05	0.05	0.01	0.3	0.01	0.05	0.02	0.02	0.02	0.05	0.01	0.01	0.01
스위트콘	0.5	0.05	0.05	0.01	0.3	0.01	0.05	0.02	0.02	0.02	0.05	0.01	0.01	0.01
보리	0.05	0.05	0.05	0.01	0.01	0.02	0.05	0.02	0.02	0.02	0.05	0.05	0.01	0.01
옥수수	0.05	0.05	0.05	0.01	0.01	0.02	0.05	0.02	0.02	0.02	0.05	0.05	0.1	0.01
Tea	0.05	0.1	0.1	0.01	0.01	0.05	0.1	0.1	0.05	0.1	0.1	0.05	0.01	0.05
커피콩	0.05	0.1	0.1	0.01	0.01	0.05	0.1	0.1	0.05	0.1	0.1	0.05	0.01	0.05
생강	0.05	0.1	0.1	0.01	0.01	0.05	0.1	0.1	0.05	0.1	0.1	0.05	0.01	0.05
슈거캔	0.5	0.05	0.05	0.01	0.01	0.01	0.05	0.02	0.02	0.02	0.05	0.01	0.01	0.01
우유	0.1	0.02	-	0.01	0.01	0.01	-	0.02	-	0.02	-	0.01	0.01	0.01
달걀	0.05	0.02	-	0.01	0.01	0.01	-	0.02	-	0.02	-	0.02	0.01	0.01
꿀	0.05	0.02	-	0.01	-	0.05	-	0.05	-	0.05	-	0.05	-	0.05

http://members.wto.org/crattachments/2014/sps/EEC/14_1674_00_e.pdf

● 일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규격기준 개정안 WTO 통보(2014. 4. 2)¹²⁾

- 일본 노동후생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 규격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2014년 4월 2일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 동 개정안에 포함된 품목:

- 식용채소 및 특정 뿌리와 괴경(HS Codes: 07.01, 07.02, 07.03, 07.04,

12) G/SPS/N/JPN/338



07.05, 07.06, 07.07, 07.08, 07.09, 07.10, 07.14)

- 식용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껍질(HS Codes: 08.01,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08.14)
 - 커피, 차, 양념류(HS Codes: 09.03, 09.04, 09.05, 09.06, 09.07, 09.08, 09.09, 09.10)
 - 곡물류(HS Codes: 10.01, 10.02, 10.03, 10.04, 10.05, 10.07, 10.08)
 - 잡곡, 종자 등(HS Codes: 12.04, 12.05, 12.06, 12.07, 12.10)
- 농약 Oxine copper에 대한 최대 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imits; MRLs)는 다음과 같다.

■ 농약 Oxine copper에 대한 최대 잔류허용치 개정초안 ■

농약	주요 품목	MRL(개정초안) ppm	MRL(현재) ppm
Oxine copper	양파	0.2	1
	마늘	0.1	1
	당근	0.3	1
	파슬리	0.3	1
	토마토	3	1
	오이	3	1
	호박	3	1
	수박	0.5	2
	멜론	0.1	2
	생강	0.05	1
	오렌지	5	2
	자몽	5	2
	라임	5	2
	복숭아	0.2	2
	체리	0.2	2
	딸기	0.1	2
	포도	1	2
망고	0.5	2	

자료: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4/SPS/JPN/14_1691_00_e.pdf

● 일본, 한국산 고추 검역불합격 판정(2014. 4. 22)¹³⁾

- 일본은 지난 4월 22일 명령검사 결과, 한국산 고추 51CT 1,010kg이 지폐노코나졸 기준치(0.01ppm)를 초과하여 검역불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검사 결과 한국산 고추에서 지폐노코나졸 0.02ppm이 검출됨에 따라 전량 회수 및 폐기되었다.
 - 한국산 고추는 현재 100% 명령검사 대상으로, 300건 이상의 미검출 실적이 있어 야 명령검사가 아닌 모니터링 검사로 변경된다.

● 인도네시아, 가금류 수출입 검역조치 규정 WTO에 통보(2014. 4. 7)¹⁴⁾

- 인도네시아는 가금류 수출입에 대한 동물 검역조치 관련한 규정(No. 37/Permentan/OT.140/3/2014)을 2014년 4월 7일 WTO에 통보하였다.
 - 동 규정은 가금류를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질병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가금류 수출입에 대한 동물 검역조치들의 시행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 인도네시아의 국경간 가금류 수출입의 경우, 검역요건은 다음과 같다.
 - 원산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발행된 동물건강증명서(인도네시아로의 가금류 수입의 경우) 및 출국 지점에서 검역 수의사에 의해 발행된 동물건강증명서(인도네시아로부터의 가금류 수출의 경우) 등의 검역문서를 수반해야 한다.
 - 지정된 출입국 지점을 통해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출입국 지점의 검역책임자에게 검역요건이 통보되고 제출되어야 한다.
 - 동물검역책임자에 의해 실시된 검역조치들을 대상으로 한다.
- 인도네시아 국경 내 가금류 수출입의 경우, 검역요건은 다음과 같다.
 - 출입국 지점에서 동물검역책임자에 의해 실시된 검역조치들을 대상으로 한다.
 - hand carry의 형태로 수출된 가금류의 경우, 출국 지점에서 검역 수의사에 의해 발행된 동물건강증명서 요건은 제외될 수 있다.

13)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14) G/SPS/N/IDN/92



2. 최근 수입제도 변경 사항

● 중국, 수입식품 불량기록관리 시행세칙 발표(2014. 4. 14)¹⁵⁾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은 수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수입식품업체의 책임을 구체화하며, 업계 자율 규율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4월 14일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 질검총국은 각 지역에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을 설치하여, 수입식품과 관련된 안전 정보를 수렴, 심사 및 보고하여 불량기록을 작성하고, 불량기록이 있는 수입업체 및 국가 혹은 지역의 수입식품에 대해 통제조치를 실시하였다.
 - 질검총국은 취합된 불량기록 정보에 대한 검토와 판정을 진행하고, 검토 판정 결과에 근거하여 리스크 조기경보 통보를 발표하여, 불량기록 수입식품기업에 대해 등급별 통제조치를 취해 이를 공포한다.
 - 수입식품 국외생산업체 등록업체인 경우, ① 기한내 개선 ② 등록자격 정지 ③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 다음과 같은 정보에 의거한 검토 및 판정을 통해 수입식품업체 불량기록을 입력한다.
 - 수입식품 검사검역감독관리 업무 중 발견된 식품안전정보
 - 업계협회, 업체, 소비자로부터 접수된 식품안전정보
 - 국제조직, 국외 정부기관, 국외 업계협회, 업체 및 소비자로부터 접수된 식품안전정보
 - 기타 수입식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
- 중국의 수입식품에 대한 통제조치가 강화된 만큼, 수출업체는 불량기록이 등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15)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유기가공식품의 해외수출 활성화 전략
: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 보고서 기획 및 작성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발 행 일 : 2014. 9.

발 행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37-78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02) 6300-1119 <http://www.aT.or.kr>

자료문의 : aT 농수산물식품기업지원센터 식품수출정보팀

02) 6300-1408

- 「aT get」은 농식품수출과 관련한 이슈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정리한 자료입니다.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사이트 www.kati.net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하실 수 있으나 무단전재,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